

의안번호	2216051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6.2.6.
추계번호	26B023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충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충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의2(충간소음기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소음의 정의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¹⁾에 따른 반려동물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충간소음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충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 조정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전문기관이 추가 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주체는 및 역할은 [표 1]과 같음

[표 1] 층간소음 관리부처 역할 및 현황

구분		역할	관련법령
기후 에너지 환경부 소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실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관련 분쟁 조정 및 피해배상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토 교통부 소관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피해 사실조사, 심의·조정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두 기관 협의	한국환경보전원	상담원 교육 훈련 및 층간소음 예방 확 산 교육 운영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층간소음 측정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층간소음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민원 상담을 수행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층간소음 전문기관²⁾인 한국환경보전원은 상담원 교육 훈련 및 층간소음 예방인식 확산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표 2]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4	2025	2026
생활공해관리 (1633-321)	소음·진동 관리대책	층간소음 현장진단·측정서비스 제 공	2,650	2,570	2,39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3]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4	2025	2026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1034-360)	공동 주택관리 지원기구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관리진단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1,274	1,474	1,474

자료: 국토교통부

[표 4] 한국환경보전원 운영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주요 내용	2024	2025	2026
생활공해관리 (1633-321)	소음·진동 관리대책	상담원 교육 훈련 및 층간소음 예방 확산 교육 운영 등	577	577	527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발생할 층간소음 분쟁의 규모 및 층간소음 측정·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관련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개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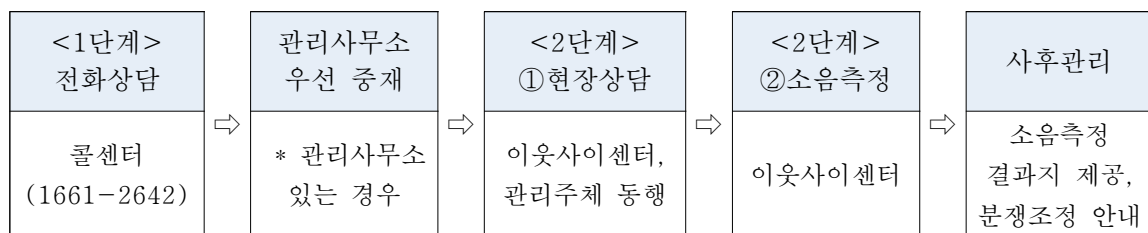
□ 개요

- (운영목적)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간의 갈등 조정·완화 유도
-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사업기간) '12년 ~ 계속
- (운영방법) 한국환경공단 위탁 운영

□ 주요업무

- 층간소음 콜센터(1661-2642) 운영·관리 및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단일번호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센터 업무절차, 방문상담 등 신청 방법, 층간소음 저감 및 대응요령 등 안내
-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 층간소음 저감물품(슬리퍼·가구패드·도어스토퍼 등) 제공
- 층간소음 자가측정 프로그램 운영(층간소음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 상담절차 (이웃사이서비스)



[참고자료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1단계	2단계(현장진단)				
	전화상담 접수·처리 (콜센터+ 온라인)	처리대상	처리현황*			
		접수	소계	추가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음 측정
계	381,457	95,116	94,905	71,001	20,026	3,878
`12년	8,795	1,829	728	351	377	—
`13년	18,524	3,271	2,620	1,396	1,224	—
'14년	20,641	4,465	4,617	2,789	1,747	81
`15년	19,278	4,712	5,000	2,477	2,364	159
`16년	19,495	6,306	5,741	3,380	2,158	203
'17년	22,849	9,226	8,576	6,170	1,997	409
'18년	28,231	10,142	10,294	8,058	1,817	419
'19년	26,257	7,971	9,654	7,447	1,745	462
'20년	42,250	12,139	11,608	10,711	714	183
'21년	46,596	9,211	9,891	8,412	1,088	391
'22년	40,393	7,771	7,609	6,116	1,035	458
'23년	36,435	7,064	7,336	5,708	1,252	376
'24년	33,027	7,033	7,112	5,224	1,420	468
'25년 (7월)	18,686	3,976	4,119	2,762	1,088	26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